



고시계여, 법률문화 창달의 선구자로서 새롭게 판갈이하라

月刊 『考試界』가 2013년 6월호를 기점으로 창간 57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일제 36년동안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 법령을 만들지도 못하고, 우리와 전혀 관련 없는 일본법령을 적용을 받으면서 매우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조국 광복의 환희에도 불구하고, 3년간의 미군정을 거쳐, 1948년 7월 17일에서야 간신히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여 공포·시행함으로써 국가의 기본 틀을 겨우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계속된 6.25전쟁의 참화속에서 모든 것이 정지되고, 무너져 내린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법령 제정작업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법은 1953년 9월 18일에 제정하여 1953년 10월 3일부터 시행하였고, 형사소송법은 1954년 9월 23일에 제정하여 195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즈음 月刊 『考試界』가 창간되어 일제의 법문화에 젖어 있던 우리나라의 법률문화를 새롭게 일신하여 우리 나름의 법문화 형성과 창달에 자리매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민법은 1958년 2월 22일에 제정하여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 민사소송법은 1960년 4월 4일에 제정하여 196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상법은 1962년 1월 20일에 제정하여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만든 헌법과 형법, 형사소송법만이 겨우 시행되고 있었고, 아직 민법과 상법도 만들어지지 않아서 일제의 법령이 (구)민법, (구)상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던 1956년 6월에 벌써

배 병 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月刊 『考試界』가 창간되어 고시지방학생들의 필독서가 되었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법률문화 형성에 기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1980년대 후반까지도, 지금과 같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 개념이 없었고, 법학교수의 학문적 연구성과가 특정한 학술지에 게재되어야만 연구논문으로 인정되는 때가 아니라서, 月刊 『考試界』에 실린 법학교수들의 연구논문이나 평석도 연구업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법학교수들이 月刊 『考試界』에 연구논문이나 평석을 신기를 희망하였고, 이에 따라 月刊 『考試界』의 논문게재가 쉽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매우 비중이 있는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법시험을 비롯한 국가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많은 학생들이 月刊 『考試界』를 읽지 않고는 합격할 수 없을 정도로 인식되어, 사실상 '수험생의 바이블'이라고 일컬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지금과 같이 교과서나 문제집 등이 많이 출간되지 않았고, 간혹 月刊 『考試界』에 게재된 교수의 논문이 그대로 행정고시 등 국가시험에 출제되기도 하여, 月刊 『考試界』의 논문이나 평석이 사법시험 등 고시준비에는 가장 중요한 중추였을 뿐 아니라,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지금처럼 복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月刊 『考試界』를 찢어서 기본서에 끼워 넣어 공부를 해야 하기에, 月刊 『考試界』가 지금보다도 훨씬 구독판매량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月刊 『考試界』는 대학교수와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필독서가 됨으로써 우리나라 법률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굳게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는 사법시험 등 국가시험 응시자를 위하여 법정, 월간고시, 고시연구 등 많은 수험서가 창간되어 발전하다가 없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유독 그 중에서도 月刊 『考試界』 만은 계속하여 일취월장 발전하고 있는 것은 경영진의 올바르고 건전한 판단과 법률문화 창달이라는 경영목표와 이에 관한 탁월한 경영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月刊 『考試界』 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교수와 학생 등 독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月刊 『考試界』 에 대한 관심과 편달이 필요하고, 이는 저를 포함한 모두 법학교수들의 임무라고도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月刊 『考試界』 의 창간 57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덧붙여, 저는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으로서 로스쿨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원할 뿐 아니라 법과대학의 안정적인 발전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月刊 『考試界』 가 기존의 발간목적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로스쿨 학생들의 변호사시험의 도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법과대학 학생들의 각종 국가시험에 대한 도전에도 기여할 색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로스쿨을 지망하고자 하는 모든 대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치러야 하는 법학적성시험에도 月刊 『考試界』 가 관심을 쏟아서 이들 대학생들의 로스쿨 진학 및 진로모색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갈이를 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